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8)

- ESSD와 기업 경영 -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원장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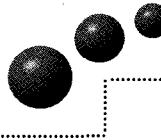
- I . 지속가능한 개발이념과 실현 수단
- II . 지구환경문제와 기업의 당면 과제
 - 1. 환경문제와 기업
 - 2. 환경영영의 도입
 - 3. 환경 및 경영요소의 통합
- III . 환경영영 표준과 유사 프로그램
 - 1. 환경영영규격의 생성 배경
 - 2. 국제규격의 종류 및 내용
 - 3. 다른 환경영영 원칙 및 프로그램
- IV . 국내 제도 및 운영 실태
 - 5. ISO 14001/14004/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비교
- V . 환경영영 도입에 따른 기본 전제
 - 1. 환경영영의 기본원리와 도입에 따른 이점
 - 2. 환경영영의 도입에 따른 실천전략
 - 3. 성공적인 환경영영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과제

4.3.2. 근거 및 내용

- 7. 연수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21조)
 - 1) 연수기관의 지정취소 등은 인증기관에 준한다
(법 제21조, 영 제21조)
 - 법 제17조(인증기관의 취소등)의 규정은 연수기관이 이를 준용한다. 법 제21조)
 - 영 제19조(인증기관의 취소등)의 규정은 준용한다(영 제21조)
 - ※ 인증기관, 연수기관의 취소는 통상부장관 권한임.

8. 심사원(법 제22조)

- 1) 환경영영체제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심사원)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장 또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심사원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원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 제22조 ①)
 - 환경경영체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자(인증심사원)는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
(규칙 제17조①)
 -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서 인증심사원 자격을 인증받은자로 한다
(규칙 제17조②)
 - ① 심사원보는 제20조의 규정(연수기관의 지정)에 의한 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심사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이 있는자 일 것(규칙 제17조 ② 1)
 - ② 심사원은 심사원보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사의 모든과정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규칙 제17조 ② 2)



③ 선임심사원은 심사원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사의 모든 과정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규칙 제17조 ② 3)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 수행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개별인증심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심사업무의 분야는 학력과 실무경력 등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로 한다

(규칙 제17조 ③)

2)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의 지정을 받은 심사원 인증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시 동일, 법 제22조 ②)

3) 심사원의 자격기준, 사후관리 기타 자격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2조 ③)

–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법 제22조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인증절차 등(규칙 제18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장에 제출

(규칙 제18조 ①)

① 규칙 제17조2항 각호(심사원별 학력,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진

–자격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규칙 제1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의 종류,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심사범위 및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한(소정 서식) 심사원 자격인증서 교부(규칙 제18조 ②)

–인증 심사원은 그 자격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자격인증서가 훼거나 못쓰게 되거나 이

를 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재교부
(규칙 제18조 ③)

4) 인증 심사원의 자격유지(규칙 제19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의 요건은 통상부령으로 정함

①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은 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경력을 유지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규칙 제19조 ①)

② 인증심사원은 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규칙 제19조 ②)

③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의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규칙 제19조 ③)

–자격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심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제19조 ④)

–자격 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20일전까지 심사경력의 유지 및 보수교육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자격인증의 갱신을 신청(규칙 제19조 ⑤)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자격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업무의 정리를 명할 수 있다(규칙 제19조 ⑥)

–규칙 제19조⑥(직무수행을 위반하여 직무수행)에 따라 자격 인증이 취소된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규칙 제19조 ⑦)

9. 인증비용 등(법 제23조)

–인증기관, 연수기관 또는 심사원 인증기관은 당해기관의 업무규정(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이 자격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영영체제 인증연수 또는 심사원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0. 업무의 협의 (규칙 제20조)

– 통상산업부장관은 규칙 제6조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립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②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③ 제8조(인증기관사업소의 변경신고)
- ④ 제9조(인증업무규정)
- ⑤ 제10조(인증심사기준)
- ⑥ 제11조(환경경영체제의 인증등)
- ⑦ 제12조(인증의 표시)
- ⑧ 제13조(연수기관의 지정기준)
- ⑨ 제14조(연수기관의 지정신청등)
- ⑩ 제15조(연수기관사업소의 변경신고)
- ⑪ 제16조(연수업무규정)
- ⑫ 제1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등)
- ⑬ 제18조(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절차등)
- ⑭ 제19조(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등)

11. 권한의 위탁(법 제28조)

1) 이법에 위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영 관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수 있다(법 제28조)

2)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8조(권한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다(영 제28조)

- ① 인증기관의 지정
- ② 업무규정의 승인(인증기관)
- ③ 인증기관의 지도, 감독

④ 연수기관의 지정

⑤ 업무규정의 승인(연수기관)

⑥ 연수기관의 지도, 감독

⑦ 심사원 인증기관의 지정, 심사원자격인증 등 심사원 인증기관 및 심사원에 관한 사항

⑧ 환경영영체제인증, 환경영영체제 인증의 표시연수기관 지정과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3) 위탁받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변경시 동일, 영 제28조②),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 포함영 제28조 ③)

①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심사원의 자격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인증기관, 연수기관 및 심사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인증기관,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자격인증과 관련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통상부장관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통상부장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필요시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영 제28조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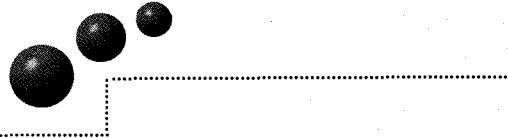
5)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위탁받은 업무를 종합하여 당해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영 제28조 ⑤)

–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통상부장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이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위탁 업무처리한 때 시정을 명하거나 개선을 요구(영 제28조 ⑥)

7) 시정명령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자체없이



그 업무를 개선 또는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상부장관에게 보고(영 제28조 ⑦)

12. 처벌에 관한 규정

(법 제5장, 제29조~제31조)

1)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통상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환경영경영체제 인증내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흥보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9조 ①) — 징역 또는 벌금

※ 환경관련표시 · 광고에 관한 규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 8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고시제1996-3호)

—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환경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제1조 목적)

—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사업자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도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 ·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적용범위)

— 이 고시로 정한 부당한 환경관련 표시 ·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① 허위 · 과장 표시 · 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 · 광고

③ 부당한 비교 표시 · 광고

④ 비방표시 · 광고

— 이 고시 시행이전에 생산된 상품의 표시에 대하여는 고시시행일(96. 9. 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제4조 부당한 환경관련 표시 · 광고 및 부칙 제2조 경과규정)

— 환경관련표시 ·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6-6호, 96. 11. 4)

환경관련표시 · 광고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6-3호, 96. 8. 13)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 일반국민에게 동법 및 고시에 대한 정부의 운영방침과 동규정내용에 위배되는 부당한 환경관련 표시 · 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주기 위하여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이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표시 ·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환경관련표시 ·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환경관련표시 · 광고의 기본원칙

2. 일반원칙

가. 환경관련 표시 · 광고의 진실성

나. 환경관련 표시 · 광고의 상당성

다. 환경관련 표시 · 광고의 실증성

라.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고려

마. 환경관련 표시 · 광고의 대상구별

바. 비교광고

사.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3.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관련 표시 · 광고

4. 특정용어 및 표현의 사용

가. "재활용물질", "재활용물질 함유(율)",

"재생○○"

나. "쓰레기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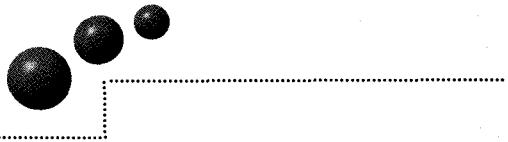
다. "에너지(또는 물)절약", "에너지(또는 물)효율적", "에너지(또는 물)보존"

라. "오존층 보호", "오존층 친화적"

마. "분해성", "생분해성", "광분해성", "썩는"

- 바. “퇴비화가능”
- 사. “재활용가능”
- 아. “리필가능”, “재사용가능”
- 자. 환경마크 등의 사용
- 5. 표시 · 광고의 방법
 - 가. 허가, 인증,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 등의 인용
 - 나. 실험기관의 실험결과 인용
 - 다. 증언식 광고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9조 ②) - 징역 또는 벌금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연수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29조 ②항 1호)
 - 통상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환경영업체제인증의 표시방법 및 홍보방법을 위반하여 환경영업체제 인증을 표시하거나 통보한다
 (법 제29조 2항 2호)
- 3)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의 위반 및 환경영업체제 인증의 표시 및 통보를 위반할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30조) - 양벌규정
- 4) 인증기관, 연수기관 또는 심사원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제, 법 제31조)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 13. 법시행에 관한 사항(부칙①)
 - 1)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 부칙①)
 - 1996년 7월 10일부터 시행
 -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부칙①)
 - 이 영은 공포한 날(1996. 7. 13)부터 시행
 - 3)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규칙 부칙①)
 -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6. 8. 13)부터 시행
- 14. 환경영업체제 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부칙 ②)
 - 1) 이법 시행전에 환경영업체제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의 양성, 기타 환경영업체제 인증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법 부칙②)
 - 2) 이 경우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행위는 이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법 부칙 ②)
 - <인증기관, 연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부칙 제2조)>
 - 이 규칙 시행전에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후보인증기관 또는 후보연수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규칙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또는 이 규칙 제14조(연수기관의 지정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후보인증기관 또는 후보연수기관 지정 당시의 지정 기준과 이규칙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기



준) 또는 이 규칙 제13조(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지정기준 또는 연수기관 지정기준과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를 하고 그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규칙 부칙 제2조)

〈인증기법에 관한 경과조치(규칙 제3조)〉

· 이 규칙 시행전에 법 부칙 제2항(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 흥청장 또는 통상부장관이 지정한 후보인증기관에 의하여 시범인증을 받는 기업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이 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인증업무규정)에 의한 인증의 사후관리를 받아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인증심사기준)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인증을 받는 기업으로 본다

〈심사원 양성 등에 관한 경과규정(규칙 제4조)〉

· 이 규칙 시행전에 법 부칙 제2항(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 흥청장 또는 통상부장관이 지정한 후보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경영체제 심사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심사원보의 자격기준)에 의한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규칙 제4조)

· 기업에 대한 시범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을 이 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규칙 제4조)

● 환경영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통상산업부 고시제1996-382호('96. 9. 30))

1. 목적(제1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환경영경영체제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제2조)

- 영 제17조 제2항 규정
- 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별표 1)
- 3. 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제3조)
 - 규칙 제16조 및 규칙 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인증절차(별표 2)
 - 4.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절차 등(제4조)
 - 규칙 제7조 제2항, 영 제18조 규정
 - 인증기관 지정절차 및 지도, 감독 등 세부사항(별표 3)
 - 5.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방법 등(제5조)
 - 규칙 제12조 규정
 -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별표 4)
 - 6. 연수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제6조)
 - 제13조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
 - 연수업무규정에 관한 세부사항(별표 5)
 - 7. 연수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절차 등(제7조)
 - 규칙 제14조, 영 제20조
 - 연수기관 지정절차 및 지도 · 감독 등 세부사항
 - 8.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제8조)
 - 규칙 제17조내지 제19조의 규정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자격인증절차 및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별표 7)
 - 9. 환경영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해석지침(제9조)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또는 변경)을 득한 수
 - 이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 해석지침을 정할 수 있다.